KOSHA GUIDE

C - 86 - 2018

- (바) "유해위험요인"이라 함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를 말한다.
-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 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제재조치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영업정지의 요청 등)에 의거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제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 용	관련 근거
1. 제23조(안전조치)·제24조(보건조치) 또는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이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제51조의 2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립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재 내용	관련 근거
민간발주공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인 이상 사망부터 대상)	80조(별표6)
공공발주공사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